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8. 14 선고 2024나13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8. 14 선고 2024나134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3. 12. 20 선고 2023가합3021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7. 11.

판결선고 2024. 8. 14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. 12. 20. 선고 2023가합3021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. 12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).

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,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0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한 반면,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 110,000,000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총 350,000,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, 피고가 원고에게 60,000,000원만을 지급하면 위 350,000,000원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다는 취지여서 부당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.

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140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한 반면,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110,000,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채권·채무관계를 모두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확정되었으므로,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·채무관계에도 효력이

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.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원종찬, 판사 박동욱, 판사 홍순건